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증빙서류 제출 알림

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훈련비 증빙서류 요건이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(예고)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변경 배경

○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을 신청하고 사업주의 자부담 내역을 확인하지 않게 됨에 따라, 미수료에 따른 불이익을 훈련기관이 부담하고 사업주의 훈련 관심 저조

○ 이에 따라 무료교육 위주(특히 원격훈련)로 시장이 형성되어 양질의 훈련 공급환경 악화

□ 변경 내용

○ 적용 대상 : '18.11.1 이후 개시(시작일 기준)되는 모든 위탁훈련의 비용지원신청

* 외국인 취업교육과정은 변경 후에도 제출 불요

○ 적용 내용 : 훈련기관의 훈련비 신청 시 훈련비 증빙서류 제출

< 훈련비 증빙 제출 서류 >

항 목	기 존	변 경
훈련비	증빙 제출 불요	아래 ①~④번 항목 중 한가지와 ⑤를 함께 제출 ① (전자)세금계산서 + 계좌이체내역 ② 「소득세법」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+ 계좌이체내역 ③ 훈련기관이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사본 ④ 현금영수증(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) ⑤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 * 모든 증빙서류는 자부담금액과 정부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일 것
숙식비	○ 숙식제공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지출 증빙서류 - 계산서, 계좌이체내역, 숙식비지원대장 등 - 사업주가 숙식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사업주의 자체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○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납확인서 * 숙박비 신청이 있는 경우만 증빙서류 제출	변경 없음

한국산업인력공단
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